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보조기기 휴대 근거 신설〉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3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 예 지 의 원 대 표 발 의 (2217430)	1
Ⅰ . 제 안 경 위	1
Ⅱ .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Ⅲ . 검 토 의 견	2
1. 교 통 약 자 의 항 공 기 내 보 조 기 기 휴 대 근 거 신 설 (안 제 21 조 의 2 신 설 등)	2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2174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보조기기 휴대 근거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국가의 책무를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보조기기 휴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생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의2(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휴대) ①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아니

현행	개정안
	<u>하는 범위에서 교통약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항공기내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방해행위¹⁾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²⁾

1)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 내 보안을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³⁾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1」(국토교통부고시) 】

①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O)	비고
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총전식 총 3)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활·석궁·화살·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항공보안법」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등 관련서류 확인 ·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전자총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동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 가능
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7.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②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X)	
※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8. 뇌관	
9. 기폭장치 및 도화선	
10.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11. 폭죽, 조명탄	
12. 연막탄류	
13.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14. 토치	· 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 가능
15.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16.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17.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농약 등)	

다만,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이 아님에도 일부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거나,⁴⁾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항공사 판단으로 기내 반입을 거부당했다가 다시 허용된 사례, 와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좌석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일반 운임의 6배에 달하는 추가 요금을 요구한 사례⁵⁾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해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기기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⁶⁾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하고,

4) 미디어 생활, 「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탑승 거부 ... 인권위 진정」

5) 비마이너, 「“장애인은 업고 가라” 항공 차별 반복... 김예지, 보조기기 반입 명확화 법안 발의」, 2026.3.

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의 책무에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정에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⁷⁾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⁸⁾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용편의 보장 의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및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⁹⁾이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반법으로 항공기를 포함한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동법은 노선버스·전세버스·도시철도·철도 등 개별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8)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1조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61조제1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편의기준의 개정을 통해 보조기기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식이 보다 법체계상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보조기기는 항공기 내 반입 제한이 없고, 보조기기가 「항공보안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및 항공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내 공간상 제약(크기, 무게 등)이 클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이 제한되며 이는 국내외 법령·규정·기준 등에 따라 준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한편, 항공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탑승·하기, 항공기내 서비스 등)를 제공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